

제327회

임시회
2024. 9. 6.(금)

산업위원회 안건

산업위원회
제1차회의



영동군의회

Yeong Dong County Council

영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4. 8. 23.

영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63
----------	---------

제출년월일 : 2024. 8. 23.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및 사업비 지원 규정 신설 (안 제25조 ~ 제 26조)
 - 물놀이 안전사고 관련 교육 및 훈련과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장비 또는 물자 등의 지원, 민간단체의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활동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 첨부 1. 영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영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다음부터“관리지역”이라”를 “(이하 “관리지역”이라”로, “(다음부터”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로행위”를 “고기잡이 행위”로, “수난사고는”을 “수난 사고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다음부터”를 각각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익수자(溺水者)”를 “익수자”로 한다.

제3조 중 “(다음부터”를 “(이하”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다음부터”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부적합하다고”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관기관·단체”를 “기관·단체”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를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3시간 이내에 즉시”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안전시설 설치비)”를 “(예산확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비·확충”을 “정비·확충 예산과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사업비 지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놀이 안전사고 관련 교육·훈련 사업
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장비 또는 물품 지원 사업
3. 민간단체가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2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물놀이 관리지역"<u>(다음부터 "관리지역"이라 한다)</u>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저수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영동군수<u>(다음부터 "군수"라 한다)</u>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p> <p>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u>어로행위</u>(낚시, 투망 등), 도강(渡江),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u>수난사고</u>는 제외한다.</p> <p>3. "물놀이 위험구역"<u>(다음부터 "위험구역"이라 한다)</u>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p>	<p>제2조(정의) ----- -----.</p> <p>1. -----<u>(이하 "관리지역"이라</u> ----- ----- ----- -----<u>(이하</u> ----- -----.</p> <p>2. ----- ----- ----- ----- <u>고기잡이 행위</u>----- ----- <u>수난 사고</u>는 -----.</p> <p>3. -----<u>(이하</u> ----- ----- ----- ----- -----</p>

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다음부터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溺水者)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6.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생략)

2. 물놀이 안전시설(다음부터 "안전시설"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계획

-----.

4. -----(이하

----- 익수자 -----

-----.

5.·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
--(이하 -----

-----.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

-----.

1. (현행과 같음)

2. -----(이하 -----

3. (생 략)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계획

5.·6. (생 략)

제8조(안전관리요원 확보) ① (생 략)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
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생 략)

제15조(지도·감독) ① (생 략)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3. (현행과 같음)

4. 관계 기관 -----

5.·6. (현행과 같음)

제8조(안전관리요원 확보) ① (현
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고용정책 기본법」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적합하지 않다고 -----
--

제16조(자격기준) -----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 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 5. (생략)

제19조(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5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 7. (생략)

제20조(휴일 비상근무) ①·② (생략)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충청북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5조(안전시설 설치비) 군수는

-----.

1. ----- 기관·단체 -----

2. ~ 5. (현행과 같음)

제19조(대응계획 수립) -----

-----.

1. ~ 3. (현행과 같음)

4. 관계 기관-----

5. ~ 7. (현행과 같음)

제20조(휴일 비상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22조(상황보고) ① -----

-----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3시간 이내에 즉시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예산확보) -----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5조
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
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군
수는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
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
다.

제27조(홍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 정비·확충 예
산과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
원 운영 -----.

제26조(사업비 지원) 물놀이 안전
사고 예방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놀이 안전사고 관련 교육·
훈련 사업
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수
습을 위한 장비 또는 물품 지
원 사업
3. 민간단체가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p>4. ~ 8. (생략)</p> <p><u>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4. ~ 8.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농산업건설국 재난안전과장 김 명 식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 9. 6.>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 9. 6.>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공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영동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4. 8. 23.

영동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안 번호	2024-64
----------	---------

제출년월일 : 2024. 8. 23.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매일유업(주) 영동공장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축소 및 계획변경을 위한 영동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 매일유업(주) 영동공장 일원
 - 어촌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를 반영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 85,185㎡
(건폐율 40%, 용적율 100% → 건폐율 20%, 용적율 80%)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147,258㎡ → 62,073(감 85,185㎡)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용도지역 변경안>

구분	주 요 내 용			
비도시 지역	○ 어촌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를 반영한 용도지역 변경 · 어촌리 :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85,185㎡]			
	구분	기정	증감	변경안
	합계(㎡)	147,258	-	147,258
	계획관리(㎡)	147,258	감)85,185	62,073
	보전관리(㎡)	-	증)85,185	85,185

<용도지구 변경안>

구분	주요내용						
용도지구	○ 어촌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를 반영한 용도지구 변경 · 어촌리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감 85,185㎡]						
	구분	지구명	지구의세분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어촌리	산업·유통	147,258	감)85,185	62,073	2004.12.24

4.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 주민의견 청취

- 기간 : 2024. 6. 5. ~ 2024. 6. 19. (14일간)
- 방법 : 군 홈페이지, 군보

○ 관련부서(기관) 협의

- 기간 : 2024. 6. 10. ~ 2024. 6. 26.
- 부서(기관) : 영동군 경제과 외 3개 부서(의견없음)

5. 향후계획

- 2024. 08. : 영동군계획위원회 자문
 - 2024. 09.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 2024. 11.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4. 12.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 ※ 향후 일정은 행정절차 진행 시 변동될 수 있음